

# 『그린라운드』 어떻게 대처하나



崔玟休 / 林業研究院

## 1. 머리말

우루과이라운드 폭풍이 지나면 다음은 그린라운드 태풍이 불 것이라고들 한다. 『그린라운드』란 用語는 91년 10월 미 상원의원 맥스 보커스(Max Baucus) 씨가 UR 이후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자간 협상을 주장한 것이 효시였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와 그린라운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세계 공통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類似概念이면서도, 국제무역질서로 보아서는 상반된 뜻도 들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의 신장을 통해 경제개발의 인류공통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인데 반하여, 그린라운드는 GATT체제가 환경문제를 무시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TO(세계 무역기구) 체제의 출범과 함께 무역규제를 통해 환경보전의 이상을 실현하자는 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본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여서, 서로가 원인이 되고 서로가 결과가 되면서 문제를 惡循環시키기도 하고 善循環시키기도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 2. 그린라운드의 내용

현재 152개 환경협약 중 18개의 협약이 그 이행수단으로 무역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추세에 있다.

그린라운드의 핵심은 ① 각국이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의 차이만큼 相計關稅를 부과하고, ② 국제환경협약으로 무역을 규제하며, ③ 한나라가 어떤 환경관련 제품을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예를 들면 몬트리올議定書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와 동 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에 교역을 금지하고 있고, 바젤협약은 국가간 유해폐기물을 이동할 때 비가입국과의 거래를 금지도록 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아직까지 무역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부속의정서에서 이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할 경우 선진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이 강화되어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탄산가스 배출 수준을 동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금년부터 협의가 시작될 山林議定書에는

지속적임업경영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하여 무역규제가 포함될 전망이고, 야생동식물보호협약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교역금지 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 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 수출입시 주권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3. 그린라운드와 임업분야의 대응

임업은 개발과 환경의 양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유일한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목재와 種實 등 각종 특수임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임업개발의 측면이고, 국토보전과 깨끗한 물, 맑은공기 등 다양한 환경기능을 창출하여 공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환경보전의 측면이다.

생물종의 60%이상이 산림속에 賦存되어 있고, 목재 1톤 생산할 때마다 1.6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하여 대기농도를 조절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시킨다. 대기권에 녹아있는 탄산가스의 總量이 약 7,000억톤에 달하고 산림등 地表植物體에 固定되어 있는 炭素 또한 약 7,000억톤이므로 자연의 섭리가 균형을 유지할 만큼 되어 있음에도, 최근 인류의 지나친 경제개발로 화석연료를 過用한데서 자연균형이 깨어지고 대기중 탄산가스 증가됨으로써 5억년 동안 安定을 유지해온 대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각국은 리우회의 결의사항을 솔선 이행하고 특히 산림원칙성명에 표명된 바 여러원칙을 제도화함으로써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린라운드에 대응하는 상책이라 할 것이다.

첫째, 산림자원에 대하여 당대 사람들 뿐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및 정신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持續可能한 林業經營體制를 確定하고,

둘째, 임업정책을 국가정책에 우선적으로 反映시키고 임업투자에 대한 여러가지 誘引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의 국가지침을 개발하고 산림환경의 편익과 비용을 정책과 市場機能에 反映하여 内部化 하며, 산림면적을 확대하여 임업생산력을 維持增進하기 위하여 인공림을 적극 조성하는 것 등의 핵심적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多消費國家로서 그린라운드의 波高가 다른나라에 비해 클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탄산가스 배출량은 7,800만탄소톤에 달하고 있으나, 산림이 흡수하는 양은 1,200만 톤으로서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소비절감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임업분야로서는 탄산가스 흡수능력을 늘려나가는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 重要하다.

온실가스에 대한 吸收固定能力이 큰 環境樹種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외조림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대응책의 귀결점은 임업투자확대라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투자재원확보로 귀착된다. 그러나 영세산주농민이나 공공재정에 기대는 테는 한계가 있으므로, UNCED정신과 수의자 부담원칙에 따라 산림환경 수혜자인 공업자본을 임업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린라운드의 逆

風은 공업자본에게 종래와 같이 아무런 환경비용도 치루지 않고 대기중의 산소와 물을 소비하고 온실가스와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이윤만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업자본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임업투자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있어서 環境消費者(Green Consumer)의 사회윤리가 임업투자에 앞장선 회사의 제품을 선호하고, 임업투자에 인색한 회사제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企業體의 環境戰略(Green Stratagy)如何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공업자본의 향방을 올바로 유도하기 위하여 임업투자촉진법(가칭)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지 임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을 터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산림환경 수혜지역에서 직접 투자 할 수도 있고 임업환경기금에 참여하여 간접투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

업체별로 탄산가스배출량(=산소소비량)에 상응하는 최소투자기준을 의무화 할 수도 있겠고, 그 이상은 자율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접투자의 경우 일정한 산림면적에 대한 장기영림계획에는 육림업 뿐 아니라 여러 레포츠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도 공업자본 투자유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린라운드의 의미는 종전처럼 「開發」에『環境』을 규정하던 시대가 가고, 그 반대로 環境이 開發을 規定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換言하면 工業에게 林業이 밀리고 희생되던 시대가 지나고, 오히려 林業이 工業을 規定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 된다.

좁은 국토공간의 7割을 돈벌이 안되는 山林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林業界로서는 무거운 짐처럼 되어 왔던것이 경제제일주의의 시대의 숙명이기도 했으나, 지구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山林國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國土의 效率的 利用』이라는 憲法上의 理念을 林業의으로 再定立해야 할 時點이라고 생각된다.

쓰레기를

줄입시다

마음만 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위대한 우리 민족,  
씀씀이도, 쓰레기도 우선은 10%씩  
줄여 봅시다.